

문서번호	어르신복지과-1566
결재일자	2015.1.13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담당	어르신복지담당	교육문화복지담당		
이경호	정수영	이만형	01/13 도일환		
협 조					

2015년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계획



2015. 1.

교육문화복지국
(어르신복지과)

2015년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계획

생활형편이 어렵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생계안정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자 함.

I 추진 근거

■ 장애인복지법 제63조(단체의 보호·육성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·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II 기본 현황

■ 등록장애인 현황(2014. 12.)

합계	지체	시각	청각	언어	지적	뇌병변	자폐성	정신	신장	기타
19,005	9,718	2,048	1,941	161	980	2,103	146	660	647	601

※ 기타 : 호흡기, 간, 안면, 장루·요루, 간질,심장

■ 2014년 저소득장애인 무료급식 지원현황

		지체장애인협회 (대표 이성훈)	교통장애인협회 (대표 고경안)
예산	급식비	900천원 x 12개월 = 10,800천원	900천원 x 12개월 = 10,800천원
	김장비	1,200천원	1,200천원
	합계	12,000천원	12,000천원
급식장소		하월곡동 산2-11 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	돈암동 49-2 교통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
급식일		주 5일(월~금)12:00~13:00	주 5일(월~금)12:00~13:00
운영인력 (공공근로)		2명	1명
급식인원		30명	20명
비고			2013. 4월부터 급식비지원

III

추진방향

■ 저소득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

■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

N

세 부 추 진 계 획

- 운영기간 : 2015. 1. ~ 2015. 12.
- 급식대상 : 저소득 · 결식우려 장애인 등
- 운영주체 : 지체장애인협회(대표 이성훈), 교통장애인협회(대표 고경안)
- 지원예산

- 총지원 예산 : 31,296천원

- 지원대상 : 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, 교통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

- 지원액 :

지체장애인협회 무료급식비 : $2,800\text{원} \times 25\text{명} \times 20\text{일} \times 12\text{월} = 18,000\text{천원}$

교통장애인협회 무료급식비 : $2,800\text{원} \times 18\text{명} \times 20\text{일} \times 12\text{월} = 13,296\text{천원}$

(김장비 년1회 : 각 1,200천원 포함)

※ 각 협회 이용인원 참조하여 차등 지급(정산보고서 이용 인원 참조)

■ 지원방법

- 급식비 : 분기별 예산 교부 및 정산서 징구
- 김장비 : 김장철에 맞추어 예산 교부 및 정산서 징구
- 급식비(주식, 부식)만 지원하고 급식시설 운영에 따른 조리, 배식 등은 공공근로 및 자원봉사인력 활용

V

행 정 사 항

- 무료급식소 운영실태 수시점검
- 자원봉사 등 후원자 연결을 통한 행정적 지원 지속